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28호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 (안 제6조제3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안 제15조의 2 신설)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별표 2)

○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 (별표 5 비고 1 수정, 별표 6 비고 5 신설)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의회규칙 제 호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64조제2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1조제4항 중 “없는 사람”을 “없고,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

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변동되는 사항만 표기

[별지]

[별표 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제1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 · 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비 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비 고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 · 7급 : 7천원, 8 · 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 · 7급 : 7천원, 8 · 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동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제9조제1항----------.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	제6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 영 제64조제2항의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삭 제>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삭 제>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 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생략)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 사제지간 등)가 없고,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가 없는 사람을----------.
<신 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

	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